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회계181.5-	(전화번호)	신설구분	표한 연월과항
처리기관	84.1.	시            장		
시행일자	84.1.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영재 1984.2.16 시장                 </div>		
보훈연한	영    구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2.16</div>		
보    조    시    관	부    시    장    이    기    회    관    비    실    장	<div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김태은</div>	법    무    탐    방    관    심    사    관	
	재    무    국    장    홍    영    우	<div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김태은</div>	관    리    계    장    김    태    은	
	회    계    과    장    김    태    은	<div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김태은</div>	계    약    계    장    김    태    은	
기    안    책    원    사	회    계    심    사    계    장    최    준    길	84. 1.    (    김    태    은    )	지    출    계    장    김    태    은	
결    속    수    산    함    료	각    안    참    조	발    신	등    배	
내    무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규정 개정			
제1안    내부결제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0627호)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02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 규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 규정 개정(안)1부.    끝.				
				정서
제2안				
수    신    공    보    관	발    신    :    재    무    국    장			
제    목	회계사무 취급규정 개정사항 시보게제 의뢰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84.1.    )에 의거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규정 개정사항을 시보에 게재코자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규정 개정 1부.    끝.			
				발송

서울특별시 회계사 부칙 규정 개정 (안)

-----



1.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대통령령 제10627호)과 예산  
회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0212호) 및 회계예규 1201.04-105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호의 개정예 따라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원 취급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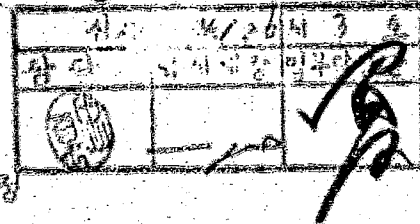
2. 주요 골자

- 0. 물품관리관 - 총괄물품관리관
- 0. 3급공무원 - 5급공무원(공무원 직급변경)
- 0. 회계예규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0.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0. 기구개편에 따른 과명칭 변경

회계 1, 2과 -- 회 계 과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회계사무 취급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회계사무취급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추관과장"을 각기관 물품관리관 (분일물품관리관) "으로 "물품관리관"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3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제3호 타목중 "회계예규 1201.04-80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5조 내지 제8조)"를 "(회계예규 1201.04-105-2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5조 내지 제12조)"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제10호 및 제18호"를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8조중 "회계1과"를 "회계과"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회계2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전토지급의 정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전토된 자급은 전토자급출납원 (입시전토자급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하고 익월 5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0-4  
15710

회계사부회급규정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4조(사업계획의 수립및 기간산정)</p> <p>② <u>주관과장은</u>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의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따로 지정된 기일이 없는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u>물품관리관에</u> 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업계획의 수립및 기간산정)</p> <p>② <u>각기관 물품관리관(본인 물품관리관)은</u> ----- ----- ----- ----- ----- <u>총괄물품관리관에</u> ----- ----- ----- ----- -----</p>	<p>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총괄물품관리관" 신설.</p>
<p>제6조(계약심사)</p> <p>② <u>전항의 경우</u> 상급관청 중앙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승인이나 협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사요구전에 주관국 과장이 승인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계약심사)</p> <p>② <u>제1항의</u> ----- ----- ----- ----- ----- ----- ----- -----</p>	<p>용어정미</p>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제7조 (계약이행기간의 연기)</p> <p>② <u>경매관(본입경매관)</u>은 <u>전항의 규정</u>에 의하여 제출된 <u>출품(납품)</u>카 한 <u>연기의뢰서</u>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7조 (계약이행기간의 연기)</p> <p>② <u>경매관(본입경매관)</u>은 제1항의 ----- ----- ----- -----</p>	용어 정비
<p>제10조 (물품구매심사위원회의 구성)</p> <p>① 물품구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본청에서는 국별로 청, 소 (<u>3급공무원 이상</u>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단위 기관별로 구성한다.</p>	<p>제10조 (물품구매심사위원회의 구성)</p> <p>① ----- ----- ----- (5급공무원) ----- ----- ) ----- -----</p>	공무원 직급 변경
<p>제12조 (구매요구)</p> <p>3. 제조, 가공품 다. 원가계산서로 작성된 내역서 (회계예규1201.04-8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작성 준칙 제5호</p>	<p>제12조 (구매요구)</p> <p>3. 제조, 가공품 다. 원가계산서로 작성된 내역서 (회계예규1201.04-105-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p>	회계예규 변경

시정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내지 제8조)</p> <p>제14조 (예정가격조서작성)</p> <p>②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사항일 때는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주관국, 과의 산출기준조사서에 외거 산출서만 작성한다.</p>	<p>제5조 내지 제12조)</p> <p>제14조 (예정가격조서작성)</p> <p>②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p>	<p>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중 제10호 및 제18호 삭제</p>
<p>제15조 (예정가격의 결정)</p> <p>경리관 (분입경리관) 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116조의2, 제116조의4, 제117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외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국, 과장이 작성한 산출기준조사서와 회계과 (계약</p>	<p>제15조 (예정가격의 결정)</p> <p>회계과 (</p>	<p>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p>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을 담당하는 과)에서 재확인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결정한다.</p>	<p>..... ) .....</p> <p>.....</p> <p>.....</p>	<p>.....</p>
<p>제18조(실제상의 책임구분) 실제내역서종 기술착, 전분 적인 수량 취청과 단가적 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회계과 (계약을 담당하는 과)의 관계공무원이 각각 그 책임을 진다.</p>	<p>제18조(실제상의 책임구분) ..... ..... ..... 회계과 (.....)</p>	<p>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p>
<p>제19조(시설공사시행) ② 전항의 규정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시설공사시행) ② 제1항와 .....</p> <p>.....</p> <p>.....</p> <p>.....</p>	<p>용어정리</p> <p style="text-align: right;">시정</p>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제26조(월별지출계획서작성)            ② <u>추관과장은 전항의 계획서</u>에 의한 매월보상비지출소요액을 그전월 20일까지 지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6조(월별지출계획서작성)            ② <u>추관과장은 제1항의 계획서</u>에 .....</p>	용어정리
<p>제27조(개산금, 선금금, 전도자금의 지출)            ① 개산금, 선금금 및 전도자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관(본입경비관) 및 <u>회계2과장</u>(지출을 담당하는 과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제27조(개산금, 선금금, 전도자금의 지출)            ① .....            ..... <u>회계과장</u> ( ..... ) .....</p>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p>② <u>전항</u> 규정의 지출결의서상단에는 개산금, 선금금, 전도자금통의 구분을 표시(고무인)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u> .....</p>	용어정리

시정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제28조 (전도자금의 정산)</p> <p><u>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u> <u>규정에 의하여 전도된</u> <u>자금은 집행한 후 그 정산</u> <u>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u> <u>여야 한다.</u></p>	<p>제28조 (전도자금의 정산)</p> <p><u>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u> <u>규정에 의하여 전도된 자</u> <u>금은 전도자금출납원(임시</u> <u>전도자금출납원) 책임하에</u> <u>집행하고 익월 5일까지</u> <u>정산하여야 한다.</u></p>	<p>1) 국비전도자금의 경우 집행완료시 정산서를 지출원 에게 제출하지 않 고있으며</p> <p>2) 전도자금출납원및 임시전도자금출납 원도 회계직공무원 야무토 지출원이 전도자금(임시전도 자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추후 시경 이 불가함.</p>